

# 6월부터 '일회용 컵 보증금제' ... 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

### 6월10일 보증금제 시행...105개 브랜드 적용 보증금 미지급·재활용 문구 미기재시 과태료 지자체서 부과...신고보상금 지급 절차 마련 단속 유예 우려도... "시행 허점 없도록 준비"

오는 6월10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위한 매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.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'(자원재활용법)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. 앞서 지난해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.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,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다.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컵 수집·운반업자 등에게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300

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 매장 안에 보증금 환불 문구나 일회용 컵 재사용·재활용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그 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.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부여됐던 과태료 처분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된다.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앞으로 보증금을 비롯해 일회용 컵 취급수수료·처리지원금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. 환경부는 현재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고시를 행정 예고한 상황이다. 앞서 지난달 17일까지 행정 예고된 고시 및 공고 제·개정안에 따라 105개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. 대표적으로 ▲스타벅스 ▲투썸플레이스 ▲아디아커피 ▲커피빈 ▲백다방 ▲에그드랩 ▲팩도날드 ▲버거킹 ▲롯데리아 ▲KFC ▲파리바게뜨 ▲뚜레쥬르 ▲던킨도너츠 ▲씨브웨이 ▲스무디킹 ▲설빙 ▲जू시 등이 있다. 이들은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패스트푸드 가맹본부나 사업자, 휴게·일반음식점,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다.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시행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유예 영향에 보증금제 시행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



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"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년여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 왔다"며 "남은 기간 제도 시행에 허점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"이라고 밝혔다. **기동취재본부**

## PC방·편의점 등도 일회용품 못쓰다...환경부, 가이드라인 배포

### PLA 등 합성수지 이쑤시개·수저 등 사용 불가 식품접객업 허가된 '편의점·PC방'도 규제 적용 리유저블컵, 회수·세척·재사용 체계 구축해야 컵라면·자동판매기·병입 음료수 등 판매 허용

락 등을 사용할 수 있다. 카페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소재 리유저블 컵은 회수·세척·재사용 체계를 갖춰 운영하는 경우에만 매장 내 사용이 허용된다.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'이 현장에 배포됐다.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업소와 일회용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. 식품접객업은 ▲커피·차, 아이스크림류,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▲일반음식점 ▲단란주점·유흥주점 ▲집단급식소 등 위탁급식 ▲빵·떡·과자 등 제과점 등이다.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. 매장에서 포장해 가져가거나 배달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. 일회용 플라스틱 컵, 접시·용기, 나무젓가락은 지난 1일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다. 생분해되는 PLA(폴리젯산)를 포함한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수저·포크·ナイ프, 일회용 이쑤시개(전분 재질 제외),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)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. 합성수지 재질이 섞인 일회용 광고선전물도 규제 대상이다.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·젓는 막대는 오는 11월24일부터 금지된다.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소별 세부 적용 사항도 담겼다. 식당에서는 케첩, 머스터드처럼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. 표면을 닦칠 등으로 가공처리해 반복 이용이 가능한 나무젓가락은 사용할 수 있다.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별도로 제공하고, 별도 회수용기를 마련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. 김밥, 샌드위치,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을 일회용기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.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다. 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 일회용 컵은 매장 내 사용이 불가하다.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리유저블 컵은 고객에게 제공한 컵은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장 내 사용이 허용된다. 단순하게 '재사용 가능'만 부각한 경우에는 일회용 컵으로 간주한다. 병입 밀크티, 주스, 우유처럼 이미 완제품으로 납품돼 판매되는 음료 용기도 매



카페·식당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재개된 지난 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한 카페에서 다회용컵 사용 문구가 붙어있다.

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·제과점, 편의점·PC방에서도 지난 1일부터 일회용 수저를 사용할 수 없다. PC방 좌석, 편의점 바깥 탁자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. 편의점과 PC방에서 판매하는 치킨·어묵·핫바 등 즉석식품이나 조리식품은 매장에서 취식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. 단, 컵라면이나 도시락은 나무젓가락



장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. 그 외 규제 품목이 아닌 컵 뚜껑, 홀더, 컵 종이갈래, 냅킨 등도 사용 가능하다. 편의점과 PC방은 매장 내에서 음식 조리·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. 예를 들어 치킨, 조각피자, 핫도그, 핫바, 어묵 등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·PC방은 매장 내 취식 시 나무젓가락과 같은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. 단, 컵라면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거나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일회용품도 사용 가능하다. 그 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앞치마, 냅킨, 다회용 수저 종이싸개, 1인용 종이 깔개, 컵 뚜껑, 종이받침, 포장지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환경부는 사용량을 줄이길 권고하고 있다. 아울러 푸드코트 취식 공간, 편의점 바깥 탁자, PC방 이용 좌석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. 단, 카페 밖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 **기동취재본부**

|  |   |
|--|---|
| <b>호남신문</b> i-honam.com  | <b>대표전화 (062) 229-6000</b><br>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|
| <b>회장·발행인·편집인 김 평 호</b>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 |   |
| <b>동부취재본부</b>  |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(061) 905-2011                |
| <b>서울취재본부</b>  |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-1 (02) 2238-0003              |
| <b>기사제보 (062) 222-2580</b>   | <b>광고직통 (062) 228-2580</b> 팩스 (062) 222-5547      |
|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(원간) / 1946년 4월 창간 / 구독료 월 10,000원 1부 500원 인 채 (주)남도프린테크<br>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. |   |

##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.  
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  
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.

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.  
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.  
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 
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.

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 
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?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 
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.  
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.

